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98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일

발 의 자 : 김종무 의원(1명)

찬 성 자 : 신정호, 이경선, 성흠제, 김평남,
박기재, 김호진, 이영실, 이병도,
이호대, 김경우, 임종국, 정진술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규정의 타당성이 미흡한 ‘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 정책 지원 및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함.

2. 주요내용

- 서울건축포럼 설립 및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건축 정책 지원 및 추진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변경함(안 제33조)
- 서울건축포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등)”을 “(민간 협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민간 협력 등) 시장은 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3조(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등) ①</u> <u>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u> <u>여 건축 관련 정책을 지원 또는 추</u> <u>진하기 위하여 서울건축포럼(이하</u> <u>“포럼”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u></p> <p><u>② 포럼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u> <u>사단법인으로 한다.</u></p> <p><u>③ 포럼은 건축 관련 민간전문가와</u> <u>건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회원</u> <u>으로 구성한다.</u></p> <p><u>④ 포럼은 건축문화 진흥 등을 위하</u> <u>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p><u>1.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및</u> <u>지원</u></p> <p><u>2. 시의 건축 관련 계획 또는 정책에</u> <u>대한 평가 및 제안</u></p> <p><u>3.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u> <u>간·보급 등 홍보</u></p> <p><u>4.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u> <u>토론회 등의 개최</u></p> <p><u>5. 그 밖에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u> <u>구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u> <u>사업</u></p>	<p><u>제33조(민간 협력 등) 시장은 건</u> <u>축 관련 정책을 지원 또는 추진</u> <u>하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u> <u>를 구축할 수 있다.</u></p>

⑤ 그 밖에 포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포럼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럼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이 제33조제4항 각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